

신선농산물 수입시 위생증명서

□ 신선농산물 수입 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 관련 법령

– 신선농산물 수입에 대한 무역부장관령 2013년 제 16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6/M-DAG/PER/4/2013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hortikultura (nomor 16/M-DAG/PER/4/2013)

※ 법령 원문은 별첨

nomor 16/M-DAG/PER/4/2013 는 수입 작물에 대하여, 작물을 신선 과일, 야채, 약재, 수생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수입 배와 포도 또한 동 법령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법령 22조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수입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서류요건 중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와 포도의 수입은 인도네시아 무역부로부터 가공을 위한 수입업자 (IP Produk Hortikultura) 혹은 유통을 위한 수입업자(IT Produk Hortikultura)허가를 받은 경우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작물 수입은 무역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 기술적 검증기준에 따라 원산지의 선적항에서 확인 된 이후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하는 기준충족요건 서류들 입니다.

1. 원산지 와 선적항
2. HS코드
3. 종류와 수량
4. 선적시간
5. 선하장소
6. (포장된 경우) 식품정보 와 포장재질 정보
- 7. 위생증명서 (Sertifikat kesehatan) (수출국에서 발급)**
8. 신선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
9.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10. 실험증명서